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86
----------	-------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서범수 · 김희곤 · 박덕흠
추경호 · 조명희 · 최형두
박재호 · 구자근 · 김도읍
이 용 · 황보승희 · 양금희
윤영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편리성의 장점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 자동차와 자전거 중간에 위치해 실제 차도와 보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차도에서의 차량 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서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3조의2제4항제4호,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156조제6호, 제156조제13호, 제160조제1항제9호·제10호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의2 중 “25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로, “차체 중량이”를 “바퀴의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이면서 차체 중량이”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보험 등 가입의무)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제82조제1항제1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및 제7호 본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을 각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로 한다.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2조제1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는”으로 한다.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4조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다.

제156조제6호 중 “자전거 운전자는”을 “자전거 운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성년 운전자는”으로, 같은 조 제13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을 각각 “개인형 이동장치를”로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미성년자”로 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10. 제49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2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보험 등에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u>25킬로미터</u>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u>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u>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의2. ----- ----- ----- <u>20킬로미터</u> ----- ----- ----- <u>바퀴의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이면서 차체 중량이</u> ----- -----.
20. ~ 33. (생 략)	20. ~ 3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	④ ----- ----- ----- ----- -----.

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⑤·⑥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⑤·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운전면허) ① (생략)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제2종 운전면허
가. ~ 다. (생략)

<신 설>

제49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보험 등 가입의무)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지사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대
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개
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
차한 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
행으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3. (생 략)

③·④ (생 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
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
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 7.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
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
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1.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2. ~ 7. (현행과 같음)

② -----

-----.

-----.

1. -----

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 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

-----.

2. ~ 6. (현행과 같음)

7.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 ----- -----.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u>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u>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 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 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 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 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 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 ----- ----- <u>원동기장치</u> <u>자전거면허 및 개인형 이동장</u> <u>치 면허</u> 는----- ----- ----- ----- ----- -----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4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
한다.

1. (생략)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9. (생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_____.

1. (현행과 같음)

[illegible]

3. ~ 9.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7. ~ 12. (생 략)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자전거 운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성년 운전자-----

7. ~ 12. (현행과 같음)

13. -----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미성년자

제160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 ④ (생략)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u>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u> <u>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하거</u> <u>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u> <u>방법으로 등록한 사람</u> 10. 제49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u>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형</u> <u>이동장치 대여사업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	---